

인천항만공사 협력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서



인천항만공사(이하 “공사” 라 한다)와 중소기업은행(이하 “은행” 이라 한다)은 인천항 협력기업(이하 “기업” 이라 한다) 금융지원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하여 「인천항만공사 협력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」(이하 “협약” 이라 한다)을 공동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공사, 은행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을 통한 국내 항만·물류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20억원의 대출 재원을 마련하여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협력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의 범위) ①공사와 은행은 공사의 추천기업 및 인천 소재 관련 업종 영위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저금리 자금조달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한다.

②공사와 은행은 본 협약에 의한 협력기업의 금융지원 제도가 확대 발전되도록 노력하기로 하며, 이를 위하여 상호 간 긴밀히 협의한다.



제3조(업무절차) ① 본 협약에 따라 공사는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에 예탁금 10억원을 예치하고, 은행은 20억원의 대출한도를 조성하여 공사의 지정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게 대출한다.

② 공사는 협력기업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협력기업 해당여부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, “공사” 의 예탁금은 중도인출 불가하며, 협약 종료 시 은행은 공사의 지급요청에 의하여 예탁금을 공사에 반환한다.

③ 협력기업의 대출금이 상환되는 경우, 해당 금액은 지원한도에 반영한다.

④ 대출지원 여부는 은행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하고, 공사는 협력기업의 대출금 연체, 미상환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.

⑤ 협약 종료 시 은행은 공사의 지급요청에 의하여 예탁금과 총 지원한도 중 대출 미공급 분에 대한 이자를 공사에 지급한다.

제4조(지원대상 기업 및 한도) ① 본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 대상은 인천항 입주 기업 또는 공사의 협력기업임이 확인된 기업으로 하며,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자금 수요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② 협력기업별 대출한도는 최고 5억원 이내로 하며, 은행은 협력기업 대출 심사 전 대출금액 한도 초과 여부에 대해 공사에 확인한다.

제5조(이자보전 Program) ① 은행은 공사가 사전에 송부한 업종의 기업 지원 시 대출금리를 우대한다.

② 은행은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취급 시 기업별로 산정한 “적용여신금리”에서 1.72%p를 자동 감면하여 특례지원하며, 추가로 기업의 신용등급, 거래기여도, 담보 등이 반영된 은행 내규에 따라 추가 감면 할 수 있다.

③ 협약 종료 시 자동감면 특례지원은 종료된다. 다만 종료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은 해당 대출 만기일까지(최장 1년간) 이자에 대한 우대가 유지된다.

제6조(책임의 한계) ① 공사의 예금은 담보로 제공되지 않으며, 공사는 여신 미회수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.

② 공사의 협력기업 추천행위는 협력기업을 위한 보증, 채무인수 등의 법적 의사표시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③ 대출대상은 공사가 추천한 협력기업 중 은행의 여신업무내규에 의한 대출 적격자로 한다. 다만 추천기업일지라도 은행의 심사결과에 의거 취그이 거절 될 수 있으며, 기한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.

제7조(대출미공급분 처리) ① 협약기간 종료 시 협약기간 내 본 협약을 근거로 협력기업에게 지원된 총 대출금액의 합계 금액(협약기간 내에 상환된 금액 및 협약기간 내 만기가 연장된 대출금액을 포함하며, 이하 “대출공급액”이라 한다)이 지원한도인 20억원보다 적은 경우, 은행은 협약기간 종료일에 공사에게 지원한도에서 대출공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배수(지원한도 20억원/예탁금 10억원)로 나눈 금액을 정산대상금액으로 하고, 이자 계산기간은 예치기간으로 하여, 정산대상금액에 대하여 연 3.15%의 이율을 적용한 후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한 정산이자를 지급한다.

②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산이자를 1년의 협약기간 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기존 협약기간의 종료일에 공사에 지급한다. 은행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본 협약이 자동연장되는 경우 해당 협약기간에 대한 정산이자를 해당 협약기간의 종료일에 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.

제8조(비밀유지) 공사와 은행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는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

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협약서의 효력, 변경)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공사, 은행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후 제3조에 따라 예치금이 예치된 날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
②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1년간 자동 연장된다.

③ 본 협약서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10조(협약의 해제 및 해지) ① 이 계약의 해제 및 해지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.

② 9조1항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법정해제·해지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제11조(분쟁의 해결)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(고시 및 공고 포함) 및 일반적인 관례에 의하여 해결한다.

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공사와 은행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6월 2일



사장 이 정 규



은행장 장 민 영

